

제 858 호

1981. 9. 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 문화공보관 김진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레

◎ 조 베

제 1536 호 : 서울특별시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3

◎ 고 시

제 324 호 :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 고시	4
제 326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5
제 327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	5
제 328 호 :	도시 계획사업 (소매시장 증축) 시행허가	6
제 329 호 :	도시 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6
제 330 호 :	도시 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7
제 331 호 :	도시 계획사업 (고속철도, 부대시설) 실시계획인가	8
제 332 호 :	담수어 판매 장소 지정 취소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34

◎ 공 고

제 243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9
제 244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탁공고	10
제 245 호 :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11
제 256 호 (강남구) :	유해조수구제공고	11

◎ 예 규

제 415 호 :	저소득시민생활편익시설운영요령(안)	11
-----------	--------------------	----

◎ 사 명

◎ 출석통지

조 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国
1981. 9. 8.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36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탁과 비동보조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탁) ①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 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수동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의 수동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호욕설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어린이집의 운영사업에 적절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조(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농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 7조(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21-4 제 858 호 시

보 1981.9.11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 5 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 9 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10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이전에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4 호

건축물높이지정구역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7-3와 5번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 16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축법 제 개발 1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9. 7.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 가. 위치: 중구소공동 97-3, 97-4, 울지로 1가 193-1, 193-2, 194-1
192-11 일부 (6 편지)
- 나. 면적: 1,050m² (317.6평)
- 다. 건축물높이: 15층 (주위건물 높이에 상당한 높이)

제 858 호 시

보 1981. 9. 11 21-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4 호(81. 7. 11.)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 12. 10.)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강동구청 도시정책과 및 세밀농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9. 8.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구분	등급	류별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50미터	강동구명일동 251-2	명일동 251-2	
"	"	"	40 "	"	" 281	
"	"	"	20 "	" 278-3	" 274	
"	"	"	100 "	" 261	" 65-1	
"	"	"	20 "	" 265	" 348-2	
"	"	"	65 "	" 268	" 65-5	
"	"	"	30 "	" 278	" 273	

○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44-8 호와 18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연립 및 부대시설)하고
동법 제 3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1981. 9. 8.

서울특별시장

21-6 제 858 호 시

보 1981. 9. 1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번호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2	8미터	1	142미터	강동구둔촌동 150-11	강동구둔촌동 147-4호	
변경	"	"	"	1	"	"	"	폐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도면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공람에 풍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8 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증축)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광고 제 71호 (76.3. 31)로 환지처분 인가공고된 동대문구 면목동 160번지 1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관제인에게 보인다.

1981. 9. 9.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면목동
160의 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소매시장증축)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토지 (1필지) : 2.591.1㎡

(783.8평)

2) 건물 : 판매장 및 관리시설 1동
4,904.46㎡ (1,483.60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동대문구
면목동 160-1번지

장안상협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범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1981. 9

2) 준공일 : 198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
재지 : 없음

아. 공사설계도서 : 별첨 (1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9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건설부고시 제 315호 (79.8. 24)로 일부 변경 결정된 서초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858호 시

보 1981.9.11 21-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 1과와 강남구청 도시 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1. 9. 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조서

공원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근 12-21	근린공원	서초공원	강남구서초, 방배동	578,959평	572,347평	감 6,612평

나. 지적승인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30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6호 (74.4.18)
로 지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
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79.12.10)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
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
해관계 인에게 보인다.

1981. 9. 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
암동 5가 126-16 외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
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면적 : 고려대 학교시설 확장

다. 사업시행면적 : 369,435평방미터
라. 건축제획 : 건축면적 : 4,671.26

평방미터 (7동)

연면적 : 8,060.88 평방미터

○ 직당-전 : 498.18 평방미터,

연 : 1,348.72평, 지하
1층, 지상2층,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 전산소--전 : 487.04평,

연 : 1,713.72평

(신축)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이공대동관-전 : 763.56평

연 : 763.56평

지상4층-5층으로 증축, 철
근콘크리트라멘조

○ 이공대서관-전 : 763.56평

연 : 763.56평

21-8 제 858 호 시

지상 4 층 - 5 층으로 증축, 철
근콘크리트라멘조
○ 신관 - 건 : 1,312.40 ㎡
연 : 2,624.80 ㎡
지상 1 층 - 3 층으로 증축, 석
조
○ 사대 - 건 : 794.58 ㎡
연 : 794.58 ㎡
지상 2 층 - 3 층으로 증축, 석
조
○ 수위실 - 건 : 51.94 ㎡
연 : 51.94 ㎡
(신축) 지상 1 층, 조적조
* 별첨도면표시참조 (도면생략)
마.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
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 번지 학교법
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활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3.10.30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아. 사용할토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26-16, 160, 042 ㎡
(학교용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9-26,
59, 207 ㎡(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2,
150, 186 ㎡(학교용지)
자.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

보 1981. 9. 11

원 (수용할 토지 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1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부
대시설)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81.3.
23)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지하철 2 호선 제 2 차량기지 (차고) 및
연입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고속
철도, 부대시설) 실시계획을 도시계획
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과 전설
부고시 제 463 호 (79.12.10)에
의하여 이를 인가 및 고시한다.
2. 관제도서를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
본부 기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 9.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위치 : 강서구 신정동
(132, 215, 249 번지
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322, 330, 344 번지
일대)
고척동 (31 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지하철 2 호선 제 2 차량기지 및 연입

제 858 호 시

보 1981. 9. 11 21-

선전설공사	◎ 서울특별시고시제 332호
3. 사업 규모	담수어 판매 장소 지정 취소
가. 인입선 : 폭 10 미터 - 20 미터 연장 2,250 미터.	수산자원 보호령 제 21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0호(80.8.22)로 지정한 담수어 판매 장소 지정을 취소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나. 차고 : (면적) 258,577m ² (78,220 평)	1981. 9. 11
4. 사업시행 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
5. 사업 학수 및 준공 예정 인기일 ~ 86.12.30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명세 : 별첨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목록 : 별첨 (생략)	

기정번호	판 매 장 소			취급 주 목
	주 소	사업 주체	사업장 명칭	
01	서울특별시 중구 충림동 28 의 3	사단법인 대수연 기발전홍협회	서울특별시 지정 담수어 판매장	담수어 (판상어포함)

공 고

이를 공고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3호

1981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장

KS 표시정지처 분해제 공고	허가번호 : 제 2223호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 처분한 바 있는 아래 사 항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해	허가일자 : 80.10.13
	제조업체명 : 용원산업
	대표자 : 임 실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 가 9
	규격번호 : KS 24505
	품명 : 도어 클로우저

21-10 제 858 호 시

처분일자 81.6.9
해제일자 81.9.8
종류 및 등급 표준형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198 호 (71.4.7)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06 호 (73.12.24)로 시설 결정 지침 승인된 광로 28호선 연장 1,000 미터 구간과 건설부 고시제 198 호 (71.4.7)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08 호 (73.12.24)로 시설 결정 및 지침 승인된 대로 3류 108호 연장 870 미터 구간내 저축 현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련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련인에게는 개별 통지하거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보 1981.9.11

해관제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 장소 : 강동구청 계획과
나. 공고기간 : 81.9.14-81.9.

27 (14일간)

1981. 9. 8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램 개 요

1. 사업시행지 : 가락동 334 번지 - 가락동 538 번지, 가락동 214 번지 - 가락동 660 번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외곽 도로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50 미터 연장 1,000 미터
도로개설 폭 25 미터 연장 87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 - 82.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별첨조서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 별첨조서 (생략)

제 858 호 시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5 호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청산
금 납입 고지서 공시 중달

81. 7. 1자로 납입 고지한 도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청산금 납
입고지서가 납부 의무자에게 중달한
바,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등
으로 중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 5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중달한다.

1. 공시중달 대상: 도봉지구
(방학동 김태형의 143번)

※ 대상자 명단은 도시행정과
비치

2. 공시내용: 청산금 납입고지서
81. 7월분

가. 납부장소: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

나. 납부기한: 81. 7. 1 ~ 12. 30까지

○ 강남구 공고 제 256 호

유해조수구제공고

조수보호 및 수령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유해조수 구제업무 처리
지침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포획목적: 유해조수 구제

보 1981. 9. 11 21-111

2. 포획대상조수류: 참새

3. 포획지역: 강남구 양재동, 주연
동, 신원동, 원지동, 개포동, 보이
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을현
동, 새곡동, 내곡동, 염곡동

4. 포획기간: 1981. 9. 11 ~ 82. 3. 31

5. 포획방법: 공기총, 그물

6. 포획자: 강남구청장 발행 조수
포획허가증 소지자에 한한다.

1981. 9. 10

강남구청장

예 규

○ 서울특별시 예규 제 415 호

저소득시민 생활편익시설
운영요령 (안)

제 1조 (목적) 이 요령은 시립노인
정, 시립독서실, 시립새마을 공동작
업장 등 저소득 시민생활 편익시설
(이하 "생활편익시설"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생활편익시설 운
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12 제 858 호 시

보 1981. 9. 11

제 3 조 (생활편익시설 이용대상자) 생활편익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 6 조 (전 물임차 계약) 관리자는 시립새마을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사유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 임차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월세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립노인정 : 저소득 시민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제 7 조 (운영비) ①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시립독서실 : 저소득 시민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또는 18세 이하 균로학생	②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시립새마을 공동작업장 : 저소득 시민	1. 건물유지 관리 2. 공공요금 3. 기타 필요한 경비
제 4 조 (관리 및 운영책임) ① 생활편익시설은 관할 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위임 운영하거나 관리자가 인정하는 지역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역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어떠한 사전을 설정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제 4 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적 경비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 (재산관리) ①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을 시유재산으로서 보전하기 위하여 보존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의 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을 거주용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조 (이용료 징수금지) 관리자는 이용자로 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안전수칙)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생활편익시설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수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운영일지 비치)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별로 별지 1 호내지 3호

제 858 호 시

보 1981. 9. 11 21-13

양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 (감독)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에 대하여 개분기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설보존 상태

2. 이용자, 이용상태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조 (운영상황보고) 관리자는 생

활편익시설의 매분기 운영 실적을 별도 지시하는 기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 13조 (생활편익시설 목적변경보고)

관리자는 생활편익시설을 폐쇄하고자 할때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와 면도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1호>

업무인지 (노인정)

작성자

㊂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운영시간	부터	까지
이용자 금 일	구 분	계	남	여
	금 일			
	누 계			
금 일 지원사항				
금 일 준비사항				
특기사항				

21-14 제 858 호 시

보 1981. 9. 11.

<별지 2호>

업무일지 (록서실)

작성자

㊂

년월일	년 월 일(요일)		운영시간		부터		까지	
	구	분	체	중 학 생	고 등 학 생	기	타	
이 용 자	금	일	남	여	소	체	남	여
	누	계						
금 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 소							
지원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료수공급 회							
준비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록기사항								

제 050 호

시

보

1961.9.11

21-15

〔별지 3호〕

업무일지 (새마을공동작업장)

작성자 Ⓛ

작업일원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운영시간		부터 까지	
		계		현장 작업		귀가 작업	
		구 분	남 여	남 여	남 여		
	금 일						
	누 계						
작업 내용							
누가 사항							

1841

21-16

제 859 호

자

보 1981.9.11

사 령

◎ 1981년 9월 7일자 형제 341호

지방행정사무관 주 순식

부직을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 1981년 9월 16일자 형제 342호

청 소 파 신 영 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1 항제 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 1981년 9월 7일자 형제 343호

운 영 과 김 상 의
지방행정사무관

울지연습 '81 중앙계획통제단 파견
근무를 명함 (81.9.7 - 81.9.26)

토 목 시 험 소 이 재 명
지방토목기과

울지연습 '81 수도군단 파견근무를
명함 (81.9.9 - 81.9.26)

공 일 파 이 금 우
지방행정사무관

울지연습 '81 개업자회소 파견근무를
명함 (81.9.10 - 81.9.24)

구 칙 정 리 파 황 선 문
지방토목기사

울지연습 '81 수도군단 작전처파견
근무를 명함 (81.9.10 - 81.9.20)

재 개 발 1 파 성 광 수
지방지적기사

울지연습 '81 수도군단 작전처파견
근무를 명함 (81.9.10 - 81.9.20)

◎ 1981년 9월 15일자 형제 344호

전 라 북 도 김 사 원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 1981년 9월 8일자 형제 345호

서울특별시기획관리관 도지훈
이 사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제 858 호 시

보 1981.9.11 21-17

서울특별시산업국국장 이사관 김백수	영등포구청장 부이사관 변의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감사관에 보함.
서울특별시수도국국장 공업기감 김인주	환경국장 이사관 박순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내무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부이사관 이집홍	세종문화회관장 지방이사관 윤백영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이사관에 임함. 산업국장에 보함.
대통령	주택국장직무대리 부이사관 이원종
서울특별시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장 정석현 지방시설부기감	주택국장에 보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청장 부이사관 도재용
서울특별시장	교통국장에 보함.
◎ 1981년 9월 11일자 경제 353호	성북구청장 부이사관 정영설
내무국장 이사관 김진원	종로구청장에 보함.
기획관리관에 보함.	

21-18 제 858 호 시

보 1981.9.11.

동대문구청장 부이사관 안기호	지하철운영사업소장 박종우 지방부이사관
동구청장에 보함. 지하철건설본부차장 강익기 지방부이사관	부이사관에 일함. 마포구청장에 보함.
이사관에 일함. 산구청장에 보함.	중구청장 이광하 부이사관
강남구청장 부이사관 김제량	구로구청장에 보함. 마포구청장 신재영 부이사관
동구청장에 보함. 성동구청장 부이사관 신현석	영등포구청장에 보함. 감사관 이원택 부이사관
대문구청장에 보함. 공보관 지방부이사관 김진호	동작구청장에 보함. 동작구청장 김인동 부이사관
부이사관에 일함. 성북구청장에 보함.	관악구청장에 보함. 구로구청장 김진우 부이사관
강동구청장 부이사관 김제성 대문구청장에 보함.	강남구청장에 보함.

제 858 호 시

보 1981.9.11 21-19

서대문구청장 부이사관	김 두 한	◎ 1981년 9월 3일자	세무국장 부이사관	김 완 종
장동구청장에 보함.		제 무국장 겸임을 명함.		
교통국장 이사관	이 영 화	◎ 1981년 9월 9일자	차수국장 시설부기관	박 원 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세종문화회관장에 보함.		수도국장 겸임을 명함		
대통령		◎ 1981년 9월 11일자	경계 348호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지방부이사관	이재환	강동구시민국장 지방서기관	천 남 수	
지하철운영사업소장에 보함.		지역담당관		
세마을담당관 지방부이사관	백상승	내무국 서기관	조성두	
남서울개공원건설사업소장에 보함.		주택정비과장		
공원녹지국장 이사관	강병수	세무행정과장 서기관	정지호	
환경국장 겸임을 명함.		은명구총무국장		

21-20 제 858 호

시

보 1981.9.11

내무국 김원근
서기관

성북구 건설국장

지역담당관 전찬명
서기관

내무국

◎ 1981년 9월 20일자

사회지도담당관 김문종
서기관

감사담당관 (사회지도담당관겸임)

상경과장 서정희
서기관

행정과장

감사담당관 김조권
서기관

상경과장

◎ 1981년 9월 12일자 형제 354호

내 무 국 성진호
별정직지방 4급상당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함.

◎ 1981년 9월 14일자 형제 356호

총무과 임충남
지방행정주사

종로구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제 058 호 시

보 1981.9.11 21-21

출석통지서

인 본 적	성명	이 강준 (李 康 順)	소속	공무원교육원	
	주소	전북 완주군 응진면 신지리 1322	직명	지방행정서기	
적 사 함	성명	곽우영 (郭 宜 榮)	소속	주택국주택행정과	
	본적	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 114	직명	지방행정사무관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3-14	성명	이현삼 (李 賢 三)	소속	건축지도과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352-47	직명	지방건축기사		
출석이유	본적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4-3	주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68-3	
	인사위원회 진술	출석일시	1981년 9월 23일 14:00 시 분		
출석장소	시청 기회상황실 (13:30 까지 출석)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보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1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술권포기서					
인 적 사 함	성명	()	소속		
	본적		직명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